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4-9호

발행일: 2024. 12. 27. (금)

제418회 국회(정기회, 2024. 9. 2. ~ 2024. 12. 10.)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II
- 다. 푸드테크 산업 진흥·육성
- 라. STEM 분야 인재 양성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18회 국회(정기회)는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13차 본회의에서 14건, 12월 2일 열린 제14차 본회의에서 37건, 12월 10일 열린 제18차 본회의에서 49건으로 모두 10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8회 국회 제13차, 제14차, 제18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는 등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전략품목의 글로벌 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종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6)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제418회 국회 제18차 본회의에 상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하고,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며, 자녀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5천만 원→5억 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제418회 국회의 2024년 11월 28일과 2024년 12월 2일,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총 101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국회운영위원회(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3	법제사법위원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	정무위원회(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등 11인
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1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19인
1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등 13인
12	기획재정위원회(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등 16인
26	교육위원회(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등 11인
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등 10인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 김대식 의원 등 33인
3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의원 등 17인
34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3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등 12인
36	외교통일위원회(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37		6·25 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의원 등 10인
3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김석기 의원 등 191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9	국방위원회(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이종욱 의원 등 12인
4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4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의원 등 10인
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등 11인
4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등 16인
4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등 12인
4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1인
4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등 10인
4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등 12인	
49	행정안전위원회(1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8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의원 등 13인
6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의원 등 10인
6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 등 12인
6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66	문화체육관광위원회(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 등 11인
6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6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69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7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7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7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3	소관위원회(건)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7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7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의원 등 14인	
7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1인	
7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등 11인	
79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등 11인	
8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81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의원 등 12인	
8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의원 등 10인	
8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등 10인	
8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8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등 16인
86		보건복지위원회(1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8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8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8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9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 등 19인
9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 등 12인
9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의원 등 10인
9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2인
9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9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등 12인
9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3인	
100	환경노동위원회(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 등 13인
10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 등 12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 자산 과세 유예,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II, 푸드테크 산업 진흥·육성, STEM 분야 인재 양성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요

2020년 6월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과세형평성, 조세중립성, 금융세제 합리성 등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등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이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후 여야 합의로 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나, 제22대 국회는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 온 가상자산 소득과세제도는 그 시행 시기가 다시 한번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내지 암호자산(crypto assets)이 가상자산에 해당합니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가상자산 소득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시행 시기가 계속 유예되다가 이번에 또 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등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획재정위원회	<u>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u>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	2024-12-10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책 동향

<p>[120대 국정과제]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p>	<p>[120대 국정과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p>
<p>과제목표</p> <p>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p> <p>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보완 분야 집중 지원</p> <p>주요내용</p> <p>(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p>(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등</p> <p>(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 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p>(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p>	<p>과제목표</p> <p>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p> <p>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p> <p>주요내용</p> <p>(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p> <p>(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p> <p>(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p> <p>(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 마련</p> <p>(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p> <p>(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p>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②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 뒷받침
 - *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낮은 규제 혁파 등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¹⁾,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22년 0.23% → 23년 0.20%)²⁾**
 - 1)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부과 (개선)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폐지
 - 2) 당초 금투세와 연계 인계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 인하(코스피/코스닥)
- **(외환시장)**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개장 시간 연장,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보완 추진(22.3/4 발표)
 - *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역동경제 로드맵(기획재정부, 2024. 7. 3.)

② (자본시장 선진화)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 가속화(⇒참고 p.51)

- **(세제지원)** 주주환원* 증가금액(예: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 공제(24.下),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14→9%, 최대 45→25%, 24.下)
 - *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및 자사주 소각 / **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 기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24.下)
 - * (대상)중소/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 → 중소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한도)최대 600 → 1,200억원
 - 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24.下)
 - * ISA 납입/비과세 한도: 年 2천만원/200 → 年 4천만원/500만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00 → 1,000만원)
- ❖ 기업상속공제 확대 3종 세트: 기업상속공제 대상(중소/중견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한도(600→1,200억원) 확대
 - ① (밸류업) 밸류업 공시 +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 + 자사주소각) 비율 업종별 평균 120% 이상(25~29)
 - ② (스케일업) 매출 대비 투자 or R&D지출 5%(or 3%) 이상 & 연평균 증가율 5%(or 10%) 이상 + 고용유지(25~29)
 - ③ (기회발전특구) 특구 창업 o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본점 or 주사무소 특구 소재 + 특구 사업장 상시근로자 전체 50% 이상)
- **(지배구조 개선 등)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 등 이사 책임 강화(24.下)**
 - 전자 주총 도입 및 주총 기준일 효력기간 단축(3→2개월) 등 주총 내실화,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24.下)
 -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시장평가·투자 유도(25)
 - 주식 장기보유 활성화, 상속세·지배구조 선진화* 등 보완 방안 지속 강구(25~)
 - * 예)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배구조) 주주총회 기능 내실화, 이사 책임 구체화 등
- **(접근성 제고) ATS 출범 및 거래시간 연장(25, 20시),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검토**
 -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24.下), 외인 국내 투자 원화결제 원활화**(27)
 - * (現) 고객이 외국환은행 등에 일일이 가격확인 및 구두 주문 → (改) 전자플랫폼 통해 실시간 통합가격 제공받고 주문
 - ** 예) 국제통일계좌를 통한 비거주자간 장외 채권거래 원화결제 자유화(24.下),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징차 간소화(25~) 등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누리집

참고 자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 11.

[개미가 먼저다! : 장투제한 · 개미눈물법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조세정의 실현과 세제 불균형 해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될 것인가?](#)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2020 간추린 개정세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4. 7. 24.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나 찬성과 반대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찬성 입장이 있음

- 반면,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의 과세제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함

-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제 중립성을 이루고 있음(상장 주식 소액주주 기준)

□ 주식의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함

-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세제중립성 제고, 증권거래세 개편방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소득세 기본공제액에 대한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2. 5. 12.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1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임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임

- 시행을 앞둔 현재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기본공제 250만원의 적정성, 가상자산 손익통산 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및 금융상품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우리나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함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 세율을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달리 중과세하고 있지 않음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형평상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필요가 있으나,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되 기본공제 250만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세법연구 20-08 2020. 12.

- 본 보고서는 서론인 제 I 장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 II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살펴봄
- 제 III 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금융자산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소개함
- 제 IV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의 금융자산 자본이득세제를 비교하고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의 기대효과 및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제시함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5-09 2015. 12. 31.

2000년대 후반들어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 대다수의 가상화폐들은 충분한 이용자층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일부의 가상화폐들은 유의미한 사용자층을 확보하며 그 사용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을 꼽을 수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은 전통적 화폐들과는 구분되는 여러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통적 화폐들을 통한 거래들에 적용하던 과세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상화폐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들에 대한 과세상 쟁점들 또한 함께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들에 대해 어떻게 과세를 해야 할 지를 규정하는 과세기준 설정과 관련된 쟁점들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들이 존재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설정이 전통적 화폐에 비해 복잡한 이유는 가상화폐가 다양한 경제활동들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개별 세법들은 과세대상을 하나의 자산 혹은 화폐 등으로 규정한 뒤 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화폐들은 일부 거래들에서는 자산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다른 거래들에서는 지불수단으로서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기에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으로 구분하여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들에 대한 과세기준을 제시하였다.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들은 가상화폐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이 거래들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가상화폐들은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잘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매개하는 중개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원을 추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관련하여 개략적인 규제안 또한 제시하였다.

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II

개요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마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등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체계 조정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2-11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이슈 등 참조). 정부는 올해도 이와 같은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을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획재정위원회	<p>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 <p>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4-12-10 (수정가결)
2		<p>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p> <p>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4-12-10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과제목표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보완 분야 집중 지원

주요내용

-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국제적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등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
-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 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 1. 4.)

4 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1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 4 → 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
<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

일반분야 R&D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당기분	최대 2	8 ~ 15	25
증가분	25 → 35	40 → 50	50 → 60

※ 기업이 당기분/증가분 세액공제 중 선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24.下)하고, 중소기업 성장 순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 수립
 -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R&D·인력 등 특례 지원*과 함께, 전담지원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 중진공 자금 지원, 기술혁신 지원사업 추진, 외국인 인력 체류기간 별도규정 등
-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 (글로벌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중진공), 글로벌파트너링센터(KOTRA) 등 확충
 -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1개소(인니), 글로벌파트너링센터 2개소(일본, 스웨덴) 추가 계획('24년)
- (지원 효율화) 재정·금융 등 정부지원대상 선정시 민간의 선별역량 활용*, 성장성·지원사업 효과성 등의 체계적 분석 시스템 마련
 - * TIPS(민간 선투자 후 정부 매칭) 확대, 지원대상 선정시 업계전문가 참여비중 상향 등
 - * 중소기업 정부지원 개선대책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24.上)

출처: [활력있는 민생경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역동경제 로드맵(기획재정부, 2024. 7. 3.)

□ (기업)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참고 p.49)

○ (창업·벤처)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24.下),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25~)

- * 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등
- ** (민간투자) VC펀드 대영화·전문화, CVC 투자비중 확대 등 (대·중견 협력) 대·중소 M&A 활성화, 대기업 스피노프 가속화 등

○ (중소) 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을 혁신·성장친화적으로 개편

-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24.下), 부처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 및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 마련(25~)
-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3~5년) 및 점감구조 마련, 재정사업 점감구조 도입
- ** 지역 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 지원,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추진

○ (중견·대)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4.下)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공론화) 시작(25~)

- 예) 법령에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발생하는 지원 축소·규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
- 기업 부담,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 신속 추진(24.下)
- 예)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 개선(5조원 정액 - GDP 연동),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등

② (자본시장 선진화)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 가속화(☞참고 p.51)

○ (세제지원) 주주환원* 증가금액(예: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 공제(24.下),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14→9%, 최대 45→25%, 24.下)

-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및 자사주 소각 / **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24.下)

- (대상)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 - 중소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한도)최대 600 - 1,200억원

• 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24.下)

- ISA 납입/비과세 한도: 年 2천만원/200 - 年 4천만원/500만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00 - 1,000만원>

◇ 가업상속공제 확대 3종 세트: 가업상속공제 대상(중소/중견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한도(600-1,200억원) 확대

- ① (밸류업) 밸류업 공시 +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 + 자사주소각) 비율 업종별 평균 120% 이상(25~29)
- ② (스케일업) 매출 대비 투자 or R&D지출 5%(or 3%) 이상 & 연평균 증가율 5%(or 10%) 이상 + 고용유지(25~29)
- ③ (기회발전특구) 특구 창업 o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본질 or 주사무소 특구 소재 + 특구 사업장 상시근로자 전체 50% 이상)

○ (지배구조 개선 등)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 등 이사 책임 강화(24.下)

• 전자 주총 도입 및 주총 기준일 효력기간 단축(3→2개월) 등 주총 내실화,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24.下)

•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시장평가·투자 유도(25)

• 주식 장기보유 활성화, 상속세·지배구조 선진화* 등 보완 방안 지속 강구(25~)

- 예)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배구조) 주주총회 기능 내실화, 이사 책임 구체화 등

○ (접근성 제고) ATS 출범 및 거래시간 연장(25.20시),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검토

•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24.下), 외국인 국내 투자 원화결제 원활화(27)

- (現) 고개이 외국환은행 등에 일일이 가격확인 및 구두 주문 - (改) 전자플랫폼 통해 실시간 통합가격 제공받고 주문
- ** 예) 국제통일계좌를 통한 비거주자간 정의 채권거래 원화결제 자유화(24.下), 외국인 채권투자 완전절차 간소화(25~) 등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누리집

참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 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 11.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 실질적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벤처 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0. 5. 30.

- 한·일 간 정치적 이슈에서 파생하는 무역마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 확산으로 보다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따른 수출·입 쇼크는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부장제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부장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율 제고 측면에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는 조세지원제도를 강구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부장 기업의 해외공급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 연장, 해외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시 감면 혜택 부여, 부분 복귀 유형의 다양화 등 조세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유턴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다양한 측면의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12. 8.

우리나라는 2010년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 이래로 적용범위를 100% “완전 지배” 자법인에 한정하여 오고 있어,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분율 요건을 완화(100%→90%)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연결납세제도는 조세의 중립성 제고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향후 그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 시 해외 사례, 기업구조조정세제·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등의 측면과 소수 주주 보호문제 보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 푸드테크 산업 진흥·육성

개요

푸드테크(Food 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생산·유통·소비 등의 전 과정에 IT·BT(바이오 기술)·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입니다.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 원)로 '17~'20년에 연평균 약 38% 성장하였으며, 국내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61조 원(전체 식품·외식·유통 570조 원의 10.7%)으로 연평균 약 31.4% 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했고, 농식품부 내에 전담 부서(푸드테크정책과)까지 조직되어 있었으나,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수립·집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은 미흡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 계획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사업 집행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는 푸드테크 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육성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담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p>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p> <p>최근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푸드테크’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 원)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약 38퍼센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 산업 지원, 인력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시키고,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p>	2024-11-28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과제목표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청년농업인 육성)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23~),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영펀드 조성 확대
 - 적정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先임대-後매도' 방식 도입('23~) 등 맞춤형 농지 지원 강화,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조성
- (농업 디지털 혁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15개소, ~'27) 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2년)하여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23~) 및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 (식품산업 육성) 그린바이오·신소재 R&D 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
- (농산업 혁신생태계)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4), 신성장 분야 R&D 확대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 확대
- (환경친화적 농업)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120개소, ~'27),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예: 에너지화) 확대('21: 10%→'27: 23%)
- (방역체계 고도화)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2022. 8. 10.)

③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개요

- **고령, 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로는 농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 곤란
 - * 농업경영주 비중(40세 미만/ 65세이상) : ('90) 14.6%/ 18.3% → ('20) 1.2/ 56.0
-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대폭 확대***·육성하고 **디지털 기술, 푸드테크** 등을 농업에 결합,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 * 청년농(40세 미만 경영주) : ('00) 91,516가구 → ('20) 12,426 → ('27) 30,000

□ 세부 내용 및 이행 계획

- **(청년농) 교육·농지·자금·주거** 등 맞춤형 지원, 3만명 육성('27)
 - 분산된 청년농 사업 통합·패키지 지원, 지원대상('22. 2천명) 두 배 이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 마련(9월)
 - ※ 청년농 육성 정책 사례 : 스마트팜 혁신밸리(전국 4개소, 연간 약 200명)
 - ▶ 스마트팜 교육(20개월), 임대형 스마트팜(약 500명/1인, 3년), 임대주택 제공
- **(스마트농업)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 「(생산) 논·밭·온실 **스마트팜** → (유통·소비) 선별·포장을 자동화한 **스마트 APC**(산지유통시설) 및 **농식품온라인 거래소**(도매시장)」 구축
 -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장기 임대(최대 30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팜 기술·서비스 제공 기업* 육성
 - * 스마트온실 선도기업인 Priva는 클라우드 기반 최적의 작물재배 서비스 제공
- **(융복합산업) 농업을 가공·관광 등과 융복합, 부가가치 창출**
 - 지역단위 융복합거점 조성 등 산업 규모 2배 수준 확대('22. 27조원 → '27. 5)
 - ※ 청년 농촌융복합 창업 성공 사례 : ㈜에코맘의산골이유식 (경남 하동)
 - ▶ '12년 귀농하여 지역산 농산물('21. 28억원 구매) 활용한 이유식 개발·판매
 - ▶ 연간 매출액 증가('12. 1억원 → '21. 150억원) 및 일자리 창출(55명)
- **(수출 확대) '27년 농식품 수출 150억불 달성**('21. 85.6억불 대비 75% ↑), 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
 - 중동시장 중심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 기업맞춤형 수출 종합지원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 정부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2023. 1. 4.)

2-2 미래 신산업 육성

◇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

- 기술개발·규제완화·시장조성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 극대화 유도

□ 식품과 IT·BT·AI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푸드테크 신산업 육성

- 핵심기술 선정('23.1월), 'K-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연구 개발('23.9월 예타추진)
-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발굴·육성 지원 강화
 - '23년 1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27: 1,000억원), 식품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보유정보 DB화('23~'24)
- 푸드테크 육성 법률 제정('23.12월),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정비('23.6월 식약처 등)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8.

임호선 의원안: 푸드테크산업 지원·육성 근거 마련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8.

김선교 의원안: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병도 의원안: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김도읍 의원안: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푸드테크산업법 제정 및 산업 활성화: 한국푸드테크협의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전시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푸드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4. 9. 6.

푸드테크(FoodTech)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식품 제조, 가공, 유통, 소비 부문의 기술적 수요에 부합하여 기술과 산업이 접목된 것으로 융·복합 연계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추가 보완 과제와 향후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290 2023. 3.

이 연구는 국내 푸드테크 시장 및 산업 동향과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푸드테크 시장을 전망하며, 현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푸드테크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 STEM 분야 인재 양성

개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는 미래 산업과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 혁신, 경제 성장,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여겨집니다.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교육 정책, 연구 지원, 민간 협력을 통해 STEM 인재를 양성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STEM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소외 계층의 STEM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며, 구글·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이 STEM 캠프, 장학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으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대학 역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는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해외 인재·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지원·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과학기술과 공급망·통상, 경제, 외교·안보가 연결되는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중국 등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유치·보호 등 인적 자원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정부는 현행법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 육성·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의대 쏠림 등으로 이공계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내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양성체계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 2004년 현행법을 제정한 이후 우수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제정 이후 최소한만 개정되어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제정 취지와 달리 현행법으로는 이공계 연구자의 성장주기에 따른 전주기 지원체계에 공백이 있어 미래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외교·안보 차원 세계 우위 선점을 위한 전략기술 분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확보에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해외 인재·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지원·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024-11-28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과제목표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기반 조성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대학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과학기술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주요내용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 확립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 강화

- (대학 연구역량 제고)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 개편 추진
 -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확보 체계 구축
- (전주기 인재 양성)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기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확대·개편
 -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 확대 및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 부여

2023 정부 업무보고(과기정통부, 2022. 12. 28.)

7. 혁신을 이끈 핵심인재 육성·확보

◆ 육성 및 확보 경로 다변화 통해 초일류 인재기반 공고화

육성 Track I : 신속 탄력적 육성

- (전략기술별 맞춤형 인재 육성) 분야별 중견급 선도 연구자 인력 분석 통해 핵심인력 현황을 관리하고, 기초연구와 연계해 성장 지원
 - 중견-리더급 R&D지원(개인기초 중견-리더), 집단연구(혁신연구센터, ERC/SRC, IBS) 활용
- (기업주도 디지털 인재양성) 기업이 디지털 교육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교육 수 과정에 참여·협력하는 민간 주도 디지털 인재양성 확대 ('22년 9,500명 → '23년 1만명 이상)
 -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확산을 지원하고, 우수교육 기업 대상 '디지털 리더스 클럽' 선정 추진
 -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인재 발굴부터 육성, 채용 등 전 주기 인재양성 체계
-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 중·고·대학생 초급 화이트해커를 중급수준 화이트해커로 양성하는 "화이트햇스쿨" 과정 신설·운영(연 300명)
 - 악의적 사이버공격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방어하는 사이버보안 전문가
- 재능있는 인재 대상 교육 지원으로 리더급 화이트해커 양성(연 190명)

육성 Track II : 장기 지속적 성장 지원

- (대학-출연(연) 연계)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장기적 성장 지원
 - 혁신연구센터(IRC) 통해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결집, 지속가능한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우수 신진연구자 참여 및 석박사 육성기능 강화
 - Innovation Research Center : 이공계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그룹에 대해 최대 10년 간 연 50억원 규모로 지원
- 과기원, 혁신연구센터·선도연구센터*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청년 연구자 병역제도 개선** 및 대통령·대학원 과학장학금 신설 추진
 - 세종과학펠로우십, 키우리(KIURI) 등 / ** 과학기술전문사관 확대(연 25명) 등
- 세계적인 석학급 과학기술인이 도전적 연구 등 원하는 분야에서 장기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과학기술자' 선정(5년간 100명, '23년 20명) 및 활동 지원
- (우수인재 집중육성)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한우물파기"(10년간 연 최대 2억원)와,
 - 우수 디지털인재의 성장 주주기를 지원하는 "재능사다리" 지원
 - 선발전차와 평가 강화, 프로젝트X 도입 등 교육방식 다양화, 교육생 수준 진단 통해 ①해외(글로벌 트랙) ②최고전문가(스페셜 트랙) ③후속과정(청년성장 트랙)으로 성장 지원
- (미래세대) 미래형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SW·AI 교육 위해 초중등 단계부터 AI·SW 교육 전면화 추진
 -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23.上)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 7.

박충권 의원안: 이공계인력 지원 강화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1,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맞춤 지원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권기석\] 이공계 연구직의 현재와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칼럼」 2020. 3. 5.

본 고에서는 이공계 연구직의 업무와 이를 둘러싼 작업 환경이 어떠한지, 향후 미래에는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의 발달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과학기술자들의 연구활동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본질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자들은 사회의 고립된 영역이 아니라 사회 내의 다양한 타 영역과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국가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전체를 위한 공익적 활동 또한 중요하다. 최근에는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에 대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담당자로서 다음 세대에 노하우와 문화를 전달하는 교육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 관련하여 윤지현 외(2015)는 과학자의 세 가지 사회적 역할을 ‘연구성과를 대중과 공유’, ‘연구성과의 사용을 감시’, ‘좋은 세상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기술인재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정책 연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정책연구-2022-04 2021. 12. 31.

연구목적

○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 특히 대학 연구개발활동이 미래의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성장 기반으로 더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 사항 도출

주요내용

- (국내 대학 사례조사)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인력양성 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 학생의 인력(양성)성과 측면에서 더 중요한 연구과제 특성: 학생의 연구주제와의 매칭, 충분한 연구기간, 명시적인 성과목표 요구 정도, 기업 등 업계와의 연계 경험 등
- (해외 사례조사) 미국 대학원의 연구를 통한 인력양성 사례
- 대학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침 마련 경향, 다시 말해 연구자 트레이닝 시스템으로서의 대학원 교육에 대한 강조가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다수 나타남
- 개인 중심의 대학 R&D 참여 현황에 대한 CIPP 진단 결과
- 상황평가 및 투입평가 측면: 이공계 대학원생의 R&D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필요
- 과정평가 측면: 내실 있는 대학R&D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 마련 선행
- 결과평가 측면: 대학R&D활동의 목적·내용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과지표의 다변화 필요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